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운영위원회(구의회사무국)

의안번호	118
제 출 자	소형준 의원 외 10명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유천곤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 시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 여비 지급 기준이 변경될 때 우리 구 조례도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비의 지급기준(안 제6조)

-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호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별표6』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함.

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안 제7조)

- 의원의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 여비 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23. 4. 7. ~ 2023. 4. 12.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지난 3월 2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 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여비 지급기준이 변동될 때 우리 구 조례도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6조(여비의 지급기준)는 기존에는 우리 구는 ‘의원여비 지급 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33조제1항제3호1)에 규정된 [별표6]에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도 상위법에 연동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임.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1항은 기존에는 제3조(월정수당 지급) 사항이 없었으나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기존 의정활동비, 여비에 추가로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석 정지 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²⁾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치라고 사료됨.
-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3호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2)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의결’

의안번호 : 제2022-859호, 의안명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의결일 : 2022.12.19.

주문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243개 지방의회의장에게 권고한다.

주요내용 :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제한 미흡,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제한 미흡